

한국심리학회지 : 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22, Vol. 13, No. 1, 53-74  
<http://doi.org/10.53302/kjfp.2022.03.13.1.53>

##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교정 처우에서 ‘용서하기’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지 원 근<sup>†</sup>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과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 용서 모델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은 상대적으로 심각성과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피해 사건을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배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소년범들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의 범주 내에서 제한적으로 ‘용서하기’가 가능하며, ‘용서하기’를 통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개선이 교정 처우의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 교정,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

<sup>†</sup> 교신저자: 지원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E-mail: fpraise@korea.kr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시설수용 처분을 받고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시설에서 교정 교육과 처우를 받는다. 이러한 교정 처우의 목적은 단순히 구금해서 반사회적(anti-social) 행위를 중단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친사회적(pro-social) 태도를 지닌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해서 복귀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Bartollas & Conrad, 1992). 그리고 최근 형사사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서는 범죄자 개인의 처벌에만 주목하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도 절차에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도모한다(Van Ness & Strong, 2014).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해 보이는 회복적 사법 모델은 국내 교정 현장에서 가지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000년대 후반에 성인 교정에서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신용해, 2009). 이는 가해자-피해자 중재 프로그램처럼 제안된 프로그램과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 등과 같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Levrant et al., 1999).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한쪽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에만 잘못이 온전히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존한다. 심지어, 표면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 이면에 그 반대의 구도가 발견되기도 한다. 범죄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

례가 종종 목격되는데, 가령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학생이 가해 학생을 우발적으로 상해한 사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해 행위에만 집중할 경우 당해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경시되기 쉽다. 처분 결정 또는 양형 단계에서 이 부분이 참작되어 통상 감경된 처분을 받지만, 만약 이전 사건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결정된 처분이 가해자의 예상보다 중한 경우에는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정 처우에 대한 소극적 또는 저항적 태도로 이어져 교정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가해와 피해가 일부 중첩되거나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회복적 사법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권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심리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개선과 교화로 향하는 길을 막아 교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전에 가해 소년이 피해를 경험한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3자를 반대로 용서하는 장면도 가능성해볼 수 있다. 환언하면, 교정기관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범죄 사실이 이미 인정된 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구하기’가 적합하지만, 제한적인 범주에서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용서하기’의 가능성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의 이전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전환하도록 돋는 방안으로서 ‘용서하기’를 다룬 연구는 희박한 실정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본 연구는 현행 교정 처우의 보완적 방안으로 소년 교정시설 내에서의 '용서하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용서의 개념과 용서 과정에 대한 주요 모델을 개관하고, 회복적 사법에서 다뤄지는 용서와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군 소년범과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을 받는 저위험군 소년 범들 간의 피해 경험의 차이를 규명한 선행연구와 다양한 맥락에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를 토대로 소년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교정 처우 과정에서 이전 경험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처우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 용서의 개념과 과정

### 용서의 개념적 특성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용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종교와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이에 비해, 경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용서의 영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ells & Hargrave, 1998; 오영희, 2016).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대인관계에서의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피살, 가정 폭력, 친족 간 성폭력, 학대 등과 같은 심각한 피해로 인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용서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특히 분노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음을 반복해서 확인하였다(Al-Mabuk & Downs, 1996; Fincham, Paleari, & Regalia, 2002). 즉, 용서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용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오영희, 1990; 김광수, 2001; 김철환, 이영만, 김민정, 2008).

그런데 용서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의 배경과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일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수용소에 갇혔던 한 유대인에게 죽음직전의 나치 친위 대원이 용서를 구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 세계의 저명인사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용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Wiesenthal et al., 1997).

사전에서는 용서를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때 이러한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적대적·부정적 정서와 사고, 태도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Merriam-Webster, n.d.).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용서 연구에서는 분노와 적대감,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생각의 감소에 국한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및 감정의 증가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 (Murray, 2002). 용서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해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 노력하는 과정을 용서로 규정한다

(Enright, Freedman, & Rique, 1998).

용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용서가 아닌 개념들을 용서와 대조함으로써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Enright & Fitzgibbons, 2000). 심리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용서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Enright는 용서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용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용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용서는 정의(justice)와 공존할 수 있으며,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된 현대의 형사정책 체계에서도 용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가 심각하고 책임이 명백해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용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용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묵과(condoning)와 같지 않다. 이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셋째, 용서는 피해 사실의 망각(forgetting) 또는 무시(ignoring)와 다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기억의 상실 또는 의도적인 회피는 용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넷째, 용서는 화해(reconciling)를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단계가 포함되지만, 용서는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일회적인 결정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용서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내면의 부정적 정서와 사고를 바꾸어가는 과정은 몇 달에서 몇 년, 때로는 평생에 가까운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용서는 일시적인 사건이기보다 장기간의 과정이다.

예시를 통해 용서의 특징을 한 번 더 살펴

보도록 하자.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분노와 불안, 적대감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가해자의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게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를 확립하는 과정과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재결합과 같이 가해자와 화해하고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非)용서자와 달리 용서자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에서 벗어나 그를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의 안녕을 바라는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종합하면, 용서는 부정적 정서와 생각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정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가 냉혹하거나 무자비한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존을 통한 상호보완의 길을 제시한다(Enright & North, 1998).

### 용서의 유형과 단계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용서하기’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서구하기’로 구분된다.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6)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중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촉진하는 ‘자기 용서(self-forgiveness)’까지 포함하여 이 셋을 용서의 삼각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 혹은 내전처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개인의 일생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집단적 정서와

행동규범, 공유가치의 측면에서 용서를 촉진하는 집단 간 용서(group forgiveness)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Chapman, 2007; Enright et al., 2016).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대인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많은 용서 프로그램들은 Enright(2001)의 용서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Forgiveness)과 Worthington(2001)의 REACH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Wade et al., 2014). 이 두 모델은 박종효(2006)가 용서 심리 이론에 대한 개관 연구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아직 널리 소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 개관해보고자 한다.

Enright의 용서 과정 모델은 20개의 세부 과정을 포함한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개방(uncovering) 단계에서는 피해 사건으로 인한 분노를 직면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소진되고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결심(decision) 단계에서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택했던 방편들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깨닫고, 대안으로서 용서를 고려해보게 된다.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세 번째 단계는 활동(work) 단계로서, 용서자는 가해자를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한다. 즉,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통해 복수와 분노는 줄이고, 동정심과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수용하게 된다. 마지막 심화(deepening) 단계에서는 고통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자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

침내 가해자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던 극심한 적대감과 분노 등의 심리적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Worthington의 용서 모델은 Enright의 용서 과정 모델과 동일하게 용서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경험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용서를 결단적 용서(decisional forgiveness)와 정서적 용서(emotional forgiveness)로 나누어 설명한다(Worthington et al., 2007). 결단적 용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회피적 또는 적대적 행동을 자제하고 그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려 노력하지만, 용서하기로 결심하더라도 가해자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정서적 용서로 이어진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다음의 REACH 모델을 통해 이 정서적 용서를 실천하게 된다(Nation, Wertheim, & Worthington, 2018).

5단계로 구성된 R-E-A-C-H 용서 모델에서 각 알파벳은 주요 단계를 뜻한다. 회상(recall)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피해 사건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떠올리고, 공감(empathy)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용서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이타적(altruistic) 행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실천(commitment) 단계에서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면서 그간 경험한 것들을 계속하고 더 깊은 수준의 용서를 위해 글쓰기처럼 외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지속하며, 마지막 유지(hold) 단계에서는 피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이 다시 생각날 때도 계속 용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세부 절차와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Enright와 Worthington의 용서 모델 모두 용서자가 피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며, 용서의 결심과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 단계들이 한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모델 모두 용서 결심이 초기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용서의 전체 과정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용서의 종결 또는 완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여부만 확인할 뿐 이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고통이나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행동의 지속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와 동일시될 수 없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가 국내 교정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에 비해 범죄 피해자의 ‘용서하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범죄 가해자의 ‘용서구하기’에 대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용서가 배제된 채로는 화해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은 형사사법에서 용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시설수용 소년범의 특성: 가해자가 된 피해자

전체 소년범 중에서 시설수용 처분을 받는

이들은 소수에 그친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소년범 64,480명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1,573명으로, 검찰의 처리 인원 대비 약 2%에 불과하다(대검찰청, 2021; 법원행정처, 2021). 형사 법정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 수형자의 평균 수용인원은 2020년 기준 115명으로 이보다 더 적다(법무부, 2021). 시설수용의 단점인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낙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수용 처분은 실무에서 통상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들 소수의 소년범들은 심각성과 상습성의 측면에서 다른 소년범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고위험 소년범이더라도 성인범에 준해서 처벌을 우선시하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취지 및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 소년범의 신체적 조건이 성인범에 견줄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시사저널, 2021)와 소년범죄가 이전보다 흥포화·강력화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최근 수년간 확산되었지만, 심리학자들은 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발달과 책임능력의 인정 가능성, 그리고 처벌적 제재들이 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대 후반에 이르러도 아직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소년사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Steinberg, 2009).

그런데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처럼 소수의 고위험 소년범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소년범과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외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전에

도 아동기 학대나 방임 등과 같은 특정 사건과 청소년기 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으나(Widom & Maxfield, 1996; Stouthamer-Loeber et al., 2001; Ford et al., 2010), 10여 년 전부터는 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방임(신체적·정서적), 역기능적 가정환경(약물남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교정시설 수감, 별거·이혼)의 3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포괄적인 경험으로 규정하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과 소년범죄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소년범들이 생애 초기에 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단일 사건에만 노출되지 않고, 양육 환경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누적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범 중에서 성인기에도 범죄를 지속하는 경력범죄자의 특성인 범죄의 심각성(serious)과 흉악성(violent), 상습성(chronic)이 확인된 소수의 소년들(Wilson & Howell, 1993; Howell et al., 1995)과 그렇지 않은 소년들과의 비교에서 고위험 소년범들이 더 많은 수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겪은 사실이 확인되었다(Fox et al., 2015; Perez, Jennings, & Baglivio, 2018).

고위험 소년범의 상당수가 학대나 방임,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역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한 더 많은 수의 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에 저항한다는 사실은 둘 간의 연결고리 이면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Wikström & Loeber, 2000). 그런데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소수의 고위험 소년범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기 이전 혹은 청소년기에 부정적 사건들

을 반복해서 겪는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 혹은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다. 더욱이, 이들 부정적 사건들은 진공된 밀실처럼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유형의 학대와 방임, 가족의 문제행동으로 구성되는 부정적 생애경험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들은 성인 보호자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환연하면, 모든 사건은 가족 구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이 관계에서는 가해자인 소년범이 피해자가 되는 또 다른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소년범들이 겪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기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경험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이 생애 초기에 경험한 피해 사건들에 대한 분석의 초점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한 범죄 행동과의 연관에 놓여졌고, 교정시설 수용 중의 정신건강이나 생활 태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편이다. 더욱이, 이들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로 상정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들은 양육자, 보호자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이 보호자와 생애 초기에 형성하는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애착이론적 관점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이나 접근 가능성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보호자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Bowlby, Fry, & Ainsworth, 1965). 이러한 경험들은 내면화되어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 행동에 대한 기대 및 예측,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Bretherton & Munholland, 2016; Zimmermann, 1999). 한 예로, 유럽의 소년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대다수의 소년범이 보호자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준다(Wallis & Steele, 2001; Zegers et al., 2006).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들과 그로 인한 보호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그리고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은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반추하게 해서 용서하기 어렵게 만든다(Burnette et al., 2007; Murphy et al., 2015). 하지만 용서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Wade et al., 2018). 이들 스스로 내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 교육과 용서기반 치료의 제시가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용서를 통해 안정적 애착관계의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불안과 자아존중감이 개선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그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Lin, Enright, & Klatt, 2013).

본 연구의 대상인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으로 다시 눈을 돌려본다면,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들이 아동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부정적 경험들을 반복해서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양육자인 보호자와도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고, 그로 인해 타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처우가 개시된다면 교정시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며(Deitch et al., 2013), 이는 교정 처우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과거의 피해 경험에 한정해서 소년범들도 일반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내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부과된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소년범들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묵과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정시설의 수용 처분에는 사회로부터 격리와 같은 처벌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의 개선과 재활도 포함되는 점에서 심리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대안으로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에 대한 접근

###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고정

교정 처우는 범죄 사실이 이미 인정된 자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정 현장에는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 즉 ‘용서구하기’가 적합해 보인다. 공공질서 위반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유형을 제외하고 대인 범죄 혹은 대물 범죄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인 혹은 대물 범죄를 저질러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 사실이 공식 절차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즉, 범죄의 책임이 인정된 소년범들은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모두 가해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억울함을 표출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당해 사건의 형사책임 인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을 전가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해를 가한 별건을 언급하면서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일방적인 가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촉발 과정에 피해자의 잘못이 상당 부분 존재 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가해행위가 선행하는 사건들은 심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어 감경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를 교정단계에서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정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범죄행위의 중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직결된 범행뿐만 아니라 이전 사건, 더 나아가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적합한 처우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준현, 2005; 장규원, 2003).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처럼 이전 피해 경험과 이후 가해 사건 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참작될 여지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교정기관 수용 후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소년 교정시설에서 면담한 한 소년범의 사례는 가해자-피해자 구도의 일률

적 적용이 교정단계에서 항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소년 A는 아버지의 반복된 범죄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아버지와 지냈으나, 아버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그를 무서워했다. A의 아버지는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고,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A는 학교를 자퇴하고 단기간에 여러 건의 비행을 저질러 시설에 송치되었다. A는 면담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두려움, 그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어 상응하는 처분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집행하는 교정단계에서는 소년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해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소년 또한 이전에는 학대 피해자였음에도 가해자인 아버지가 사과를 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전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사건에 대한 인정과 반성, 개선을 먼저 요구할 경우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Skogstad, Deane, & Spicer, 2006). 위 사례에서도 소년은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교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명시적으로 용서를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부분적 해소만으로도 수용 생활에서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설수용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소년들이 자신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하

기'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들을 온정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무고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사건처럼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거나 또는 별개의 피해 사건을 경험했던 경우에는 비록 당해 사건에서 가해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주관적인 시각에서는 가해자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의 통상적인 반응은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나,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적 구도의 이면에 양자 혹은 다자간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들의 복잡한 양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교정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대상자들이 교정 처우에 적대적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성인 교정기관에서는 심리상담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용주, 박근영, 2018).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 교정단계의 회복적 사법과 용서

국내·외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형사사법에서의 용서도 이전보다 덜 이질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관점 중심의 기존 형사사법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가 공식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의 복구를 통해 범죄로 인한 상처에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들이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도록 하는 과정

으로 정의된다(이호중, 2009; Johnstone & Van Ness, 2013). 회복과 화해를 강조하는 주요 종교들의 교리와 여러 지역 원주민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서구권의 형사사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재는 서구 형사사법에서의 중요한 이념적 틀로 기능하고 있다(Shapland et al., 2006).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여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 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35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는데(윤지원, 이해경, 최중진, 2020),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많은 연구가 수행된 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회복적 사법이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재범방지 측면에서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김병배, 2020), 특히 소년법의 경우 성인법과 달리 보호와 교육의 대상인 점에서 주요 결정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내려야 하는 회복적 사법의 참여가 소년법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지적되었다(이용식, 2018).

더욱이,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체계 내의 다른 단계들보다 제약이 더 많은 편이다. 이미 처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려 하고(이진국, 2017), 가해자가 희망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면을 전제로 하는 화해 또는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인 교정에서 2006년부터 '희망등대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가석방과 귀휴, 특별진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가해자·피해자 화해 프로

그램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2008년까지 참여한 수형자와 피해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신용해, 2009). 소위 '회복적 교정'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김용세, 류병관, 2006; 김영식, 2013; 박호현, 백일홍, 장규원, 2016), 회복적 사법에 입각해서 실제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조정을 추진하는 제도는 현재 소년과 성인 교정기관 어느 곳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가해자-피해자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수형자의 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배임호, 2019), 피해자 가족이 참여를 거부하고 연구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이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용서 연구에서 정의하는 용서의 개념과 다르게, 회복적 사법에서는 용서를 화해의 과정에서 실행하는 하나의 단계로 간주한다(Philpott, 2015).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회복적 사법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보고된다. 특히,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큰 중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회합(conference)에 참여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hapland, 2016). 이는 앞에서 개관한 용서의 정의와 회복적 사법에서 통용되는 용서의 차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이다. 앞에서 개관한 것처럼 용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용서의 개념과 용서 과정 모델에 따르면, 가해자와의 첫 만남에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더라도 이는 용서의 완성 또는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에서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때로 충분히 보듬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확인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회복적 사법은 살인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되기 어렵다.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겠으나 용서의 직접적인 주체 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에서 시도되는 용서의 의의와 기대 효과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이후에 다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용서가 화해를 의미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아직 상처가 낫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관계를 회복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가해자에게로 눈을 돌려보면, 교정단체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에서도 가해자가 겪었던 피해 경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갈등이 범죄 행위로 확대된 사건에서는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 외에 다른 양상도 목격된다. 본 연구자가 한 성인 교정기관에서 관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B는 술집에서 인근에 앉은 사람과 말다툼 중 격분해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수개월 후 피해자가 갑자기 면회를 신청했는데, 이미 형이 선고되어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으므로 B는 면회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의 권유로 면회 요청을 수락했다.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면회를 온 피해자는 자신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B도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며 B에게 먼저 사과했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과는 B의 마음을 움직였고, B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둘은 면회실에서 함께 울면서 화해했고, 이후 B는 전보다 편해진 모습으로 교정 처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위 사례는 기준에 시도된 회복적 사법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고정된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전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과거 성인 교정의 회복적 사법 프로젝트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참여도가 저조할 우려가 있다. 이미 처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절차참여로 인한 유익이 없고, ‘용서하기’가 전제하는 잘못의 인정과 그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등의 정서는 별을 다시 받는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행과 관련된 혹은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즉 가해자가 반대로 피해자로 상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해자가 용서의 주체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용서 개관 부분에서 살펴본 용서 과정에 관한 Enright (2001)와 Worthington (2001)의 두 모델에서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상대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또 다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이 모델들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이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용서 과정 모델에서는 선별르게 ‘용서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용서를 통해 아픔

과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로 시선을 전환하는 순서로 안내하고 있다. 이를 교정 현장에 적용해 보면, 범죄 및 비행 전력으로 인해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용서구하기’가 주로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만약 이들 내면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용서하기’부터 시작해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용서구하기’도 ‘용서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도 ‘용서하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년범과 용서: ‘용서하기’의 가능성과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대상 용서 프로그램 사례

용서 과정 모델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피해를 입은 소년범처럼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용서하기’를 적용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수는 더 적은 편이다. 그런데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용서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된 목적은 시설수용 소년범들의 부정적 정서나 소극적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용서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교정 처우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용서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이러한 접근이 참여자의 심리적 문제의 해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 현장에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후에 종종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가해자 중첩(victim-offender overlap) 현상이 지적되었다(DeCamp & Newby,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김철환, 이영만, 김민정(2008)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상처가 평균보다 높고 용서는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월간 용서교육을 진행했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보복심리는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용서 수준은 증가했다. 이 결과는 4주 후 실시된 지속검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복 심리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용서교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관찰되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실마리도 함께 제시해주었다.

호주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상으로 경험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용서, 회피, 또는 복수 중에서 한 가지를 조언받은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용서가 복수 또는 회피보다 분노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atson, Rapee, & Todorov, 2017).

오영희(2007)는 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겪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용서와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부모와의 갈등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와 불안, 우울로 구성된 부적응 또한 증가하였는데, 용서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을 간접적으로 매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우울과 용서와의 관계를 규명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용서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했고, 이 두 요인 간의 부적 관계는 또한 자기위안(self-reassurance)을 통해 매개되었다(Barcaccia et al., 2020).

지금까지 살펴본 용서 프로그램 사례들에서는 분노, 불안, 우울, 보복심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에서 실시된 이들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들은 용서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피해 경험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거나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용서 프로그램의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 겪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방안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범들이 심리적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지원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교정 현장에서의 '용서하기' 적용 사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의 용서 연구, 특히 '용서구하기'가 아닌 '용서하기' 프로그램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 Enright는 본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용서구하기'가 아닌 '용서하기' 프로그램의 시행 요청을 교정기관 측에서 오랜 기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경비 등

급(S4) 교도소에 대응하는 미국의 최고 경비 등급 교도소(maximum-security prison)에 수용된 성인범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용서 프로그램 결과는 긍정적 기대를 가져다준다. 참여자 중 대다수가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피해를 경험했고, 교정시설 수용 중에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분노와 불안,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6개월 간 진행된 용서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사후검사 결과, 분노와 불안, 우울 증상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자신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전 검사보다 높은 수준의 용서를 나타냈다(Yu et al., 2021).

위의 연구에서 소개된 한 수용자의 사례는 기존 교정 처우, 특히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회복적 사법이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을 용서 기반 처우가 보완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C는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음주가 잦은 아버지와 정서적 거리를 두었다. C는 삼촌, 종교인, 동성의 사촌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학교에서도 또래들로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 이로 인해 타인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다. C는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를 용서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여전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는 때로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기간의 과정인 점도 깨달았다.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면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자기 자신도

용서하기로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분노가 감소했고, 시설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수용자를 돋겨 되면서 행동과 태도 측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다(Song et al., 2021).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도 여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용서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Park et al., 2013). 외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12주의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은 분노와 적대적 귀인이 감소했고, 공감과 용서는 증가했다. 여자 소년범은 남자 소년범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범죄의 심각성이나 흉악성도 남자 소년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 효과를 도출한 이 프로그램이 다른 교정기관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교정처우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상자의 필요를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박상열, 2009).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직업 훈련 과정, 인성교육, 특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용서 프로그램은 현행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수용 이전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했거나, 또는 당해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과 이러한 피해를 가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는 보완적인 방안으로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용서 과정 모델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용서하기'를 통해 해소해가면서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을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소년들이 일반적으로 혼거실 형태의 생활관에 수용되는데, 다른 소년 혹은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소 부분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의 교정 처우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은 용서의 개념과 특성을 개관하고, 용서 프로그램이 기반하는 용서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들은 전체 소년범 중에서도 심각성이 높은 소수의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학대와 방임, 역기능적 가정환경과 같은 여러 유형의 부정적 경험들을 겪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이를 가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이 교정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단계에서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해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어 시설수용 처분을 받았더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비롯한 별건의 피해 사실이 존재하거나,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처럼 일정 부분에서 가해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용서하기' 또한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최근 수행된 수용자 대상 용서 프로그램의 결과는 고무적인 기대를 가져다 준다. 특히, 분노와 불안,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의 경감과 가해를 가한 상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누그러짐은 수용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정 효과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면서 형사사법에서도 용서를 다루고 있으나, 용서를 화해의 일부분으로서 간주하는 경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교화와 관계의 회복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 줄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용서는 화해의 한 부분이나 전제가 아닌 독립된 도덕적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특히 '용서하기'는 상대의 참여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을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 논의되어 온 용서의 개념은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소년범은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보호와 교육의 대상인 점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강조하는 가해자로서의 '용서구하기'는 추가적인 처벌 혹은 수치형으로 기능할 우려도 지적되었다(이용식, 2018). 위의 논의를 종합할 때, 여러 유형의 심리적 어려움이 내재된 고위험 소년범에게 피해자 대면 프로그램과 같은 '용서구하기'를 선불리 시행하기보다, '용서하기'를 통해 심리적 고통의 경감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 및 태도의 변화가 선행된다면 소년들의 부담과 저항을 줄이면서

처우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국내 현장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고자 했이었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이 주가 되는 다른 연구들과 구성과 전개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계점 또한 지적된다. 우선,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 몇몇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본 연구자가 특정 기관에서 관찰한 것들로서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용서는 모든 피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피부에 발생한 상처가 가벼운 경우에는 손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다른 처치를 요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다른 방편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이겨낸다면 용서 모델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용 대상도 이전에 경험한 피해로 인해 수용 기간 중에도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소년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소수의 고위험 소년범들이 학대 경험이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의 노출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단일 사건이 아닌 종합적인 경험으로서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단일 사건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가령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또는 가정폭력처럼 유사한 형태의 부정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서 종합적이고 누적적인 경험으로서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분류심사와 결정전 조사단계에서 소년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대해 질문하

고 있으나, 수치로 계량화되지 않아 비행 수준이나 처분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비교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 중의 심리적 문제들과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조사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의 고위험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인 대상 연구 결과를 일부 소개하였다.

향후 교정 현장에서 ‘용서하기’의 적용을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자원의 투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과거에 시범 운영된 적이 있으나, 최근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의 증가처럼 이전에 비해 변화된 소년범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정 교육과 처우의 목적은 이들의 항구적인 격리에 있지 않고, 대상 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에 경험한 피해 사실들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태도를 갖게 되고, 연이은 범죄를 통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안적 조치로서 용서가 고려된다면, 그래서 소년범들이 교정시설에서 용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시도한다면 이들의 개선과 건전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연구가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광수 (2001). 용서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적용. *교육학연구*, 39, 1-24.
- 김병배 (2020). 회복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교정담론*, 14(3), 93-116.
- 김영식 (2013).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7(1), 273-296.
- 김용세, 류병관 (2006).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형사정책연구원.
- 김철환, 이영만, 김민정 (2008).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경험아동의 보복 심리와 용서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0(2), 109-125.
- 대검찰청 (2021). 2021 범죄분석.
- 박상열 (2009). 교정환경의 변화와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정연구*, 45, 7-38.
- 박호현, 백일홍, 장규원 (2016). 회복적 사법과 교정. *교정연구*, 26(4), 53-76.
- 법무부 (2021). 2021 법무연감.
- 법원행정처 (2021). 2021 사법연감.
- 배임호 (2019).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9(1), 3-35.
- 시사저널 (2021. 5. 3). '범죄소년' 줄었는데, 형사처벌 안 되는 '촉법소년' 늘었다. Retrieved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75>
- 신용해 (2009).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법학논집*, 14(2), 139-153.
- 오영희 (1990). 용서의 발달: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2), 247-273.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영희 (2016). 용서구하기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549-569.
- 윤지원, 이혜경, 최중진 (2020). 청소년대상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2000년~2018년. *청소년학연구*, 27(4), 119-139.
- 이용식 (2018).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1(3), 285-319.
- 이용주, 박근영 (2018). 교정시설 내 수용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교정상담학연구*, 3, 83-97.
- 이진국 (2017). 교정단계에서 회복사법 이념의 실천방안. *교정연구*, 27(1), 3-25.
- 이호중 (2009).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논집*, 14(2), 1-27.
- 조준현 (2005). 행형의 이념,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교정연구*, 29, 7-31.
- 장규원 (2003).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 Al-Mabuk, R. H., & Downs, W. R. (1996). Forgiveness therapy with parents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7(2), 21-39.
- Barcaccia, B., Salvati, M., Pallini, S., Baiocco, R., Curcio, G., Mancini, F., & Vecchio, G. M. (2020). Interpersonal forgiveness and adolescent

- depression. The mediational role of self-reassurance and self-criticis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2), 462-470.
- Bartollas, C., & Conrad, J. P. (1992). *Introduction to corrections*. Harper Collins Publishers.
- Bowlby, J., Fry, M., & Ainsworth, M. D. S. (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Abridged and ed. by Margery Fry*. With two new chapters by Mary D. Salter Ainsworth.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2016).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in light of contemporary neuroimaging research. In J. Cassidy, & P. Shaver,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3rd ed.) (pp. 63-88).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ette, J. L., Taylor, K. W., Worthington, E. L., & Forsyth, D. R. (2007). Attachment and trait forg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angry ru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85-1596.
- Chapman, A. R. (2007). Truth commissions and intergroup forgiveness: The case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eace and Conflict*, 13(1), 51-69.
- DeCamp, W., & Newby, B. (2015). From bullied to deviant: The victim-offender overlap among bullying victim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3(1), 3-17.
- Deitch, M., Madore, A., Vickery, K., & Welch, A. (2013).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youth violence in the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
- Enright, R. D.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Freedman, S.,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R. D. Enright & J. North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46-6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What forgiveness is not. In R. D. Enright & R. P. Fitzgibbons,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pp. 37-5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Enright, R. D., Lee, Y. R., Hirshberg, M. J., Litts, B. K., Schirmer, E. B., Irwin, A. J., Klatt, J. S., Hunt, J., & Song, J. Y. (2016). Examining Group Forgiveness: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2(2).
- Enright, R. D., & North, J. (Eds.). (1998). *Exploring forgivenes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Fincham, F. D., Paleari, F. G., & Regalia, C.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s, and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9(1), 27-37.
- Ford, J. D., Elhai, J. D., Connor, D. F., & Frueh, B. C. (2010).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6), 545-552.
- Fox, B. H., Perez, N., Cass, E., Baglivio, M. T., & Epps, N. (2015). Trauma changes

- everyth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46, 176-173.
- Howell, J. C., Krisberg, B., Hawkins, J. D., & Wilson, J. J. (1995). *A sourcebook: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 Johnstone, G., & Van Ness, D. (Eds.). (2013).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Routledge.
- Levrant, S., Cullen, F. T., Fulton, B., & Wozniak, J. F. (1999). Reconsidering restorative justice: The corruption of benevolence revisited?. *Crime & Delinquency*, 45(1), 3-27.
- Lin, W. N., Enright, R. D., & Klatt, J. S. (2013). A forgiveness intervention for Taiwanese young adults with insecure attach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5(1), 105-120.
- Merriam-Webster. (n.d.). Semantics. In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forgive>
- Murphy, T. P., Laible, D. J., Augustine, M., & Robeson, L. (2015). Attachment's links with adolescents' social emotions: The role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6(5), 315-329.
- Murray, R. J. (2002). Forgiveness as a therapeutic option. *The Family Journal*, 10(3), 315-321.
- Nation, J. A., Wertheim, E. H., & Worthington Jr, E. L. (2018). Evaluation of an online self help version of the REACH forgiveness program: Outcomes and predictors of persistenc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4(6), 819-838.
- Park, J. H., Enright, R. D., Essex, M. J., Zahn-Waxler, C., & Klatt, J. S. (2013). Forgiveness intervention for female South Korean adolescent aggressive victi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268-276.
- Perez, N. M., Jennings, W. G., & Baglivio, M. T. (2018). A path to serious, violent, chronic delinquency: The harmful aftermath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rime & Delinquency*, 64(1), 3-25.
- Philpott, D. (2015).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lls, J. N., & Hargrave, T. D. (1998). Forgiveness: A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21-36.
- Shapland, J., Atkinson, A., Atkinson, H., Colledge, E., Dignan, J., Howes, M., Johnstone, J., Robinson, G., & Sorsby, A. (2006). Situating restorative justice within criminal justice. *Theoretical Criminology*, 10(4), 505-532.
- Shapland, J. (2016). Forgiveness and restorative justice: is it necessary? Is it helpful?. *Oxford Journal of Law and Religion*, 5(1), 94-112.
- Skogstad, P., Deane, F. P., & Spicer, J. (2006). Social cognitive determinants of help 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prison inmat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6(1), 43-59.
- Song, M. J., Yu, L., & Enright, R. D. (2021). Trauma and healing in the underserved populations of homelessness and corrections: Forgiveness Therapy as an added component to intervention. *Clinical Psychology &*

- Psychotherapy*, 28(3), 694-714.
- Steinberg, L. (2009). Adolescent development and juvenile justic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459-485.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Homish, D. L., & Wei, E. (2001). Maltreatment of boys and the development of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41-955.
- Van Ness, D., & Strong, K. H. (2014). *Restor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Routledge.
- Wade, N. G., Hoyt, W. T., Kidwell, J. E., & Worthington Jr, E. L. (2014). Efficacy of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2(1), 154-170.
- Wade, N. G., Cornish, M. A., Tucker, J. R., Worthington Jr, E. L., Sandage, S. J., & Rye, M. S. (2018). Promoting forgiveness: Characteristics of the treatment, the clients, and their inter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3), 358-371.
- Wallis, P., & Steele, H. (2001).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adolescence: Further evidence from psychiatric residential setting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3), 259-268.
- Watson, H., Rapee, R., & Todorov, N. (2017). Forgiveness reduces anger in a school bullying contex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1), 1642-1657.
- Widom, C. S., & Maxfield, M. G. (1996).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risk for violence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94(1), 224-237.
- Worthington, E. L. (2001). *Five steps to forgiveness: The art and science of forgiving*. New York, NY: Crown.
- Worthington, E. L., Witvliet, C. V. O., Pietrini, P., & Miller, A. J. (2007). Forgiveness, health, and well-being: A review of evidence for emotional versus decisional forgiveness, dispositional forgivingness, and reduced unforgivenes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0(4), 291-302.
- Wiesenthal, S., Cargas, H. J., Fetterman, B. V., & Mazal Holocaust Collection. (1997). *The sunflower: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forgiveness*.
- Wikström, P. O. H., & Loeber, R. (2000). Do disadvantaged neighborhoods cause well adjusted children to become adolescent delinquents? A study of male juvenile serious offending, individu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neighborhood context. *Criminology*, 38(4), 1109-1142.
- Wilson, J. J., & Howell, J. C. (1993).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Yu, L., Gambaro, M., Song, J. Y., Teslik, M., Song, M., Komoski, M. C., Wollner, B., & Enright, R. D. (2021). Forgiveness therapy in a 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8(6), 1457-1471.
- Zegers, M. A., Schuengel, C., van IJzendoorn, M.

H., & Janssens, J. M. (2006).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and their professional caregivers: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3), 325-334.

Zimmermann, P. (1999). Structure and functions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their role for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3), 291-306.

1 차원고접수 : 2022. 02. 21.

심사통과접수 : 2022. 03. 21.

최종원고접수 : 2022. 03. 27.

## **The Possibility of Forgiving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ongeun Ji**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Ministry of Justic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forgiving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plac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to current correctional approache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misconceptions of forgiveness were outlined, and the two major models of forgiveness were introduc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cepts of forgiveness in psychological literature and in restorative justice were addressed. Based on the prior studies on the preval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serious juvenile delinquents and a recent forgiveness project conducted in a maximum-security prison, it was argued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a small number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forgive someone who did injustice in the past, which would result in an improvement in the outcomes of correctional education and treatment. Some limitations of this article and the need of further studies were pointed out as well.

*Key words : forgiveness, corrections, juvenile delinquency, restorative justi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